

– 2011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–

委員會別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1.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2. 行政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3. 福祉都市委員會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

- 2011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-

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2011年 5月 23日

麻浦區議會 運營委員會

2011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의 안	
번 호	

제안일자 : 2011. 5. 23.

제 안 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提案理由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

2. 主要內容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11. 6. 21 ~ 6. 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7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3. 關係法規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0344호, 2010.6.8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564호, 2010.12.29) 제39조 내지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2011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1. 監査의 目的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

2. 監査期間

- 2011. 6. 21(화) ~ 6. 27(월) [7일간]

3. 監査實施 對象機關(部署)

- 마포구의회사무국

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 영 위원회	[위원장] 이 필례 [간사] 오진아 [위원] 김순금, 서종수 윤동현, 차재홍 한일용	마포구의회 사무국	운영 위원회실	김은모	이천구

5. 監査日程

구분	일정	내용	비고
준비단계	2011. 5. 18(수)	○감사시기 및 기간결정	
	5.23(월)	○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5.27(금)	○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감사계획 통보	
	5.30(월) ~ 6.17(금)	○감사관계 자료 수합	
	5.30(월) ~ 6.20(월)	○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단계	2011. 6.21(화) ~ 6.27(월)	○위원장의 감사선언 ○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감사종료 선언	
감사결과	2011. 6.30(화) ~ 7.12(화)	○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6. 監査要領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行政事項

- 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서

마포구의회 사무국장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관계공무원(증언)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- 제출서류 요구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 통보
- 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
 1. 출석일시 :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정일시
 2. 출석장소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
 3. 출석대상 : 의회사무국장 (팀장 및 해당직원 등 포함)
 4. 출석요구사유 :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. 끝.

2011년 5월 일

운영위원회 위원장

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운영위원회)

-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-

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2011. 5.



행정건설위원회

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일자 : 2011. 5.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회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12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11. 6. 21~ 2011. 6. 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(8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0344호, 2010. 6. 8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564호, 2010. 12. 29) 제39조
내지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제2조, 제5조 등

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,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11. 6. 21(화) ~ 2011. 6. 27(월) [7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- 마포구 (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)
- 동 주민센터
- 마포문화재단,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 위 원 회	[위원장] 유동균	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,	행정건설 위원회실	명금길	장홍용
	[간 사] 송병길	동주민센터,		김기영	남선옥
	[위 원] 김효철, 마동환 오진아, 정형기 조영덕, 차재홍	마포문화재단, 마포구시설 관리공단	동 주민센터 행정건설 위원회실	명금길	장홍용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11. 6. 21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	
2011. 6. 22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	
2011. 6. 23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무 과 감사 - 공보관광과 감사 - 자치행정과 감사 - 문화체육과 감사 - 생활안전과 감사 - 민원여권과 감사 	
2011. 6. 24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예산과 감사 - 지역경제과 감사 - 재 무 과 감사 - 세 무 1과 감사 - 세 무 2과 감사 	
2011. 6. 27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행정과 감사 - 교통지도과 감사 - 건설관리과 감사 - 토 목 과 감사 - 치 수 과 감사 ○ 감사종료 선언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의 각과 및 동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업무보고 청취
- 바. 질의 · 답변
- 사.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- 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 출석요구서

마포구청장,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, 마포문화재단 대표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1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관계공무원(증인)등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- 서류제출 요구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 통보
- 관계공무원(증인) 출석요구
 1. 출석일시 :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정일시
 2. 출석장소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
 3. 출석대상
 - 가. 감사담당관 : 감사담당관
 - 나. 행정관리국 : 행정관리국장, 총무과장, 공보관광과장, 자치행정과장, 문화체육과장, 생활안전과장, 민원여권과장
 - 다. 기획재정국 : 기획재정국장, 기획예산과장, 지역경제과장, 재무과장, 전산정보과장, 세무1과장, 세무2과장
 - 라. 건설교통국 : 건설교통국장, 교통행정과장, 교통지도과장, 건설관리과장, 토목과장, 치수방재과장
 - 마. 동 주민센터 : 감사대상으로 지정되는 동 주민센터의 동장
 - 바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: 이사장, 상임이사, 경영지원팀장, 시장사업팀장, 주차사업팀장, 시설관리팀장
 - 사. 마포문화재단 : 대표, 경영지원부장, 경연홍보부장, 프로그램 운영부장

* 기타 해당기관 부서별 팀장 및 해당직원 등 포함. 끝.

2011년 월 일

행 정 건 설 위 원 장

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행정건설 위원회)

연번	요구자료	요구의원	소관과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2011年度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2011年 5月 20日

麻浦區議會 福祉都市委員會

2011年度 行政事務監查計劃(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일자 : 2011. 5. 20.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提案理由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主要內容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(2011. 6.21 ~ 6.27)
- 감사대상 기관은 마포구(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)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로 한다.

3. 關係法規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0344호, 2010. 6. 8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564호, 2010. 12. 29)
제39조 내지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제2조, 제5조 등

2011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1. 監査의 目的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監査期間

○ 2011. 6.21(화) ~ 6.27(월) [7일간]

3. 監査實施 對象機關(部署)

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

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 원 회	위원장 및 간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	주민생활국	•복지도시 위원회실	김건재	구본식
		도시관리국		김은모	이천구
		보 건 소			
		동주민센터	•동 주민센터	김건재	구본식

5. 監査日程

일정	감사대상	비고
2011. 6.21(화)	○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	
2011. 6.22(수)	○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- 복지행정과 - 일자리진흥과 - 사회복지과 - 가정복지과	
2011. 6.23(목)	○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- 교육지원과 - 청소행정과 - 환경과	
2011. 6.24(금)	○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- 주택과 - 도시계획과 - 도시경관과 - 건축과 - 지적과 - 공원녹지과	
2011. 6.27(월)	○보건소 행정사무감사 - 보건행정과 - 위생과 - 지역보건과 - 의약과	

6. 監査要領

- 감사는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각 과, 동 주민센터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 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監查 進行順序

- 감사실시 선언
- 위원장 인사
- 증인선서
-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업무보고
- 감사실시(필요시 현지확인)
- 감사종료 선언

8. 行政事項

-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 한다.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서

마포구청장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1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관계공무원(증인)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- 서류제출 요구**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통보
- 관계공무원(증인) 출석요구**

1. **출석일시** :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정일시
2. **출석장소**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 장소
3. **출석대상**

가. 주민생활국 : 주민생활국장, 복지행정과장, 일자리진흥과장,
사회복지과장, 가정복지과장, 교육지원과장,
청소행정과장, 환경과장

나. 도시관리국 : 도시관리국장, 주택과장, 도시계획과장, 도시경관과장,
건축과장, 지적과장, 공원녹지과장

다. 보 건 소 : 보건소장, 보건행정과장, 위생과장, 지역보건
과장, 의약과장

라. 동주민센터 : 감사대상으로 지정되는 동 주민센터의 동장

※ 기타 해당 기관·부서별 팀장 및 해당 직원등 포함. 끝.

2011년 5월 일

복 지 도 시 위 원 회 위 원 장

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복지도시위원회)

연번	요 구 자 료	요구의원	소 관 과